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결과(중국/상하이지사 작성)

I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통관/ 검역 / 라벨링 / 인증 등)

- <금·은박가루 함유 식품 생산·경영 위법행위 단속 규정> 공지에 관한 공고 (2022년 제20호)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품질안전법> 등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시장감독 관리총국, 농업·농촌부, 국가 위생 건강위원회 그리고 해관총서에서 공동으로 <금·은박가루 함유 식품 생산·경영 위법행위 단속 규정>을 제정하였음. 지금 공지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붙임> <금·은박가루 함유 식품 생산·경영 위법행위 단속 규정> 본문

자료원: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2022. 07. 12.)

출 처: https://gkml.samr.gov.cn/nsjg/spscs/202207/t20220712_348558.html

II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 점진적으로 콜드체인 수입식품 항구 방역조치 개선·보완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 공고 2022년 제58호)

수입항에서의 콜드체인 수입식품(식용 농식품 포함) 항구 코로나19 방역조치 업무를 과학적이며 정밀하게 실시하여 방역 성과를 향상시키며 산업체인·공급체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 해관총서에서는 점진적으로 콜드체인 수입식품 항구 방역조치 개선·보완하기로 결정. 해당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해관총서는 콜드체인 수입식품에 대해 코로나19 PCR 검사 및 모니터링

개시. 검사결과를 근거로 법규에 따라 수출국(또는 수출지역)의 오염예방 조치에 대해 검사와 조사 진행하여 수출국(또는 수출지역) 안전관리시스템 및 안전상황이 지속적으로 중국 수입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며 문제가 있는 해외식품제조기업에 대해 해당 법규에 따라 기한 내 시정, 일시적으로 수입 중단, 등록 취소 등 조치를 취함.

2. 코로나19 PCR검사 결과가 양성인 콜드체인 수입식품은 중국 국무원 공동 예방·공동 통제 체제(联防联控机制) 배포 지침의 관련 규정에 따라 등·등분·유형을 구분하여 처리함.

본 공고를 배포 당일부터 시행함과 동시에 해관총서 공고 2020년 제103호를 폐지.

이와 같이 공고함.

해관총서

2022년 7월 8일

자료원: 중국 해관총서(2022. 07. 09.)

출 처: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2480148/4460445/index.html>

III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통관거부사례(2022.6월)

발생 일자	HS코드	상품명	중량 (kg)	검역소	문제사유	조치사항
6월	1904100000	바나나맛 소프트콘	2004.48	닝보	식품첨가제 아스파탐 사용량 기준치 초과	반송 또는 소각
	0406100000	크림치즈	3615	텐진	유통기한 초과	

자료원 :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수출입식품안전국(2022. 07. 22.)

출 처 : <http://jckspj.customs.gov.cn/spj/zwgk75/2706876/wzrjdspxx57/4479720/index.html>

< 붙 임 >

금·은박가루 함유 식품 생산·경영 위법행위 단속 규정

제1조 식품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금(은)박, 금(은)가루형태(이하 "금·은박가루") 물질 함유 식품을 생산·경영하는 위법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며, 인민 대중의 건강을 보호하고, 시장의 소비 환경을 정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품질안전법>등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하였다.

제2조 금·은박가루는 <식품안전 국가표준 식품첨가물 사용표준>(GB2760)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첨가물이 아니며 식품원료가 아니어서 식품 생산·경영에 사용할 수 없다.

제3조 본 규정에서 언급하는 금·은박가루 함유 식품이란 식품생산경영 기업에서 생산·가공된 식품에 금·은박가루를 첨가하여 판매에 사용하는 식품을 말한다.

제4조 식품생산기업은 식품안전 법률법규 및 표준에 근거하여 식품을 생산·가공해야 하며, 원부자재 구매 통제를 강화해야 하며, 금·은박가루를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가공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식품 및 식용 농산물 판매기업은 매입검사를 강화하고 금·은박가루가 함유된 식품 및 식용 농산물을 매입하여 판매해서는 안 된다. 식당 운영자는 원료 구입·가공 제작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금·은박가루가 함유된 음식을 제조·판매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식품 수입기업은 법에 따라 식품을 수입해야 하며, 수입식품은 중국의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금·은박가루가 함유된 식품과 식품 생산·경영에 사용되는 금·은박가루를 수입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온라인 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은 주체적 책임을 엄격하게 수행하고 플랫폼 내 사업자 자질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온라인 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은 해당 플랫폼에서 식품 경영 행위 및 정보에 대해 점검하고, 온라인 식품 경영업자가 금·은박가루가 함유된 식품을 홍보·판매 등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인터넷 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은 온라인 식품생산경영업자가 금·은박가루가 함유된 식품을 홍보·판매 등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제지하고 소재지 현급(县级) 시장 감독 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중대한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중지해야 한다.

제8조 온라인 식품 경영업자는 법에 따라 영업해야 하며 인터넷 등 정보망을 통해 금·은박가루가 함유된 식품을 홍보·판매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업과 개인도 인터넷 등 정보망을 통해 금·은박가루가 식용 가능하다고 홍보해서는 안 된다.

제9조 관련된 광고주체는 식품 광고에서 금·은박가루가 식용 가능하다고 광고해서는 안 되며, 식품에 금·은박가루를 첨가하여 건강기능, 치료 효능 등이 있다고 홍보해서는 안 되며, 식품에 금·은박가루를 첨가하여 사치스러운 즐거움, 배금주의 등이 선전되지 말아야 한다.

제10조 식용 농산물의 생산·판매자는 법에 따라 식용 농산물의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식용 농산물의 품질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금·은박가루가 함유된 식용 농산물을 생산·판매해서는 안 되며, 금·은박가루를 첨가한 것을 빙자하여 식용 농산물을 과대홍보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현급(县级) 이상의 지방 시장 관리 감독 부서, 농업·농촌 주관 부서, 각급 해관은 식품안전 감독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며, 본 규정을 위반하여 금·은박가루가 함유된 식품을 생산·경영하는 행위와 선전 금·은박가루가 식용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법에 따라 단속해야 한다.

제12조 현급(县级) 이상의 지방 시장 감독 부서는 식품 생산경영기업이 본 규정 제4조,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할 경우, 식품안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자는 법에 따라公安(公安)기관에 이송하며, 본 규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할 경우, 식품안전법, 인터넷 거래 감독 관리 방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하고, 본 규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할 경우, 식품안전법, 광고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해야 한다.

제13조 해관은 수입기업이 본 규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할 경우, 폐기 또는 반송을 요구하고 식품안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해야 하며, 이미 수입한 식품을 발견할 경우, 관련 주관부서는 수입기업이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리콜을 실시하도록 감독해야 하며, 수입기업이 리콜을 거부할 경우, 식품안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제14조 현급(县级) 이상의 지방농업농촌 주관부서, 시장감독부서는 식용 농산물 생산기업, 판매기업이 본 규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할 경우, 반드시 <농산물품질안전법>, <식품안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公安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생건강행정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식품안전 보급 홍보를 추진하며,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금·은박가루가 함유된 식품에 대한 안전 위험을 설명하고 홍보하며, 소비경보를 제때 공표해야 한다.

제16조 각 관련 부서, 식품업종협회는 식품안전 홍보와 영양 건강교육을 강화하고, 건강한 식생활 방식을 장려하며, 과학적·이성적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

제17조 어떠한 단체나 개인이 금·은박가루가 함유된 식품을 생산·경영하거나, 금·은박가루가 식용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발견

할 경우, 관련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제18조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